

의안번호	2220354
의 퇴 인	조정훈의원
회 답 일	2026. 8. 5.
추계번호	26C3790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조(정의)	취학 중인 경우 아동은 24세 미만을 말함(현행: 22세 미만)	
2	안 제19조(한부모가족시설)	18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하는 시설인 생활지원시설 이용대상에 있어서, 자녀가 취학 중인 경우 24세 미만을 말함(현행: 22세 미만)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4조(정의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19조(한부모가족시설)	

2. 상세 사유

□ 취학 중인 경우 아동 대상 연령 확대(안 제4조 및 안 제19조)

- 개정안은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는 현행 정의 규정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생활지원시설 대상이 되는 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대상으로 보는 기준을 각각 24세로 확대하려는 내용임
-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, 각종 요금 감면 혜택 등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수 증가에 따라 재정지출이 증가하거나 재정수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, 대상자 수와 그들의 소득기준 등을 추정할 수 없어 현시점에서 추가재정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 성평등가족부가 제출한 2026년 기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혜택은 다음과 같음(발급 기준: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 한부모가족,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72% 이하)

【표 1】 각종 요금 감면 등 혜택

■ 건강보험료 경감	■ 과태료 50% 이내 감면
■ 복지용 쌀 할인지원 (기준가격의 60~90%할인)	■ 자동차검사수수료 감면 (기초생활수급자 면제, 한부모가족 80% 감면)
■ 지역난방·전기·가스요금감면	■ 수도요금 감면
■ 에너지효율개선 * (난방) 주거지의 단열, 창호 공사 및 보일러 보급 지원 (냉방) 에어컨 보급 지원	■ 종량제 폐기물 처리 수수료 감면
■ 에너지마우처 * 기초생활수급가구 (단, 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는 '22년 한시 지원)	■ 주민등록 등·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
■ 이동전화요금 감면 •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: 기본료 면제(월 2만6,000원까지), 통화료 50% 감면(월 최대 33,500원 감면) •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: 기본료 면제(월 1만1,000원까지), 통화료 35% 감면(월 최대 21,500원 감면) ※ 1인당 1회선(주거/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최대 4회선까지 감면)	■ 운전면허시험 교육 * 총 12시간 지원(학과 2시간, 기능 4시간, 주행 6시간)
■ 문화누리카드(연 15만원), 스포츠 강좌 이용권, 4대궁·종묘·조선왕릉 무료입장	

자료: 성평등가족부

【표 2】 아동양육비 등 복지 지원

구 분		한부모 연령		
		만 24세 이하 (청소년한부모)	만 25~34세 (청년한부모)	만 35세 이상
지원 기준	증명서	기준중위소득 72% 이하	기준중위소득 65% 이하	
	복지급여	기준중위소득 65% 이하		
지원 내용	아동 양육비	자녀 1인당 월 37~40만원 * 0~1세 자녀는 40만원	자녀 1인당 월 33만원	자녀 1인당 월 33만원
	초·중·고생자녀 학용품비	자녀 1인당 연 10만원		
	시설생계비 (생활보조금)	가구당 월 10만원		
	검정고시 학습비	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	—	—
	자립촉진 수당	가구당 월 10만원	—	—

자료: 성평등가족부

-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,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

Ⅲ. 부대의견

- 없음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	문지은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na.go.kr